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트러스트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트러스트재형다이나믹코리아 5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트재형다이나믹코리아 5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트러스트재형다이나믹코리아5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AG121)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혼합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모자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트러스트자산운용(주) (02-6308-0500)
4.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 성 기 준 일 : 2013. 3. 22.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3. 3. 29.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모집규모를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9. 존 속 기 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이므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에 따른 재형저축으로서, 일부 환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가입 후 7년(연장 이후에는 그 연장한 기간까지) 이전에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 등의 인출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최초로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년이 도래하는 때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 등의 인출시 연장한 기간 및 연장 이전 7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에 따른 재형저축으로서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KIS국고채1~2년 지수×80% + KOSPI×20%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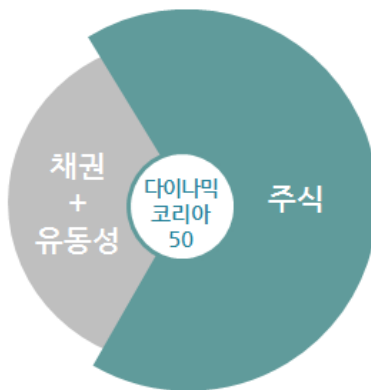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 및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른 손익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투자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투자신탁재산의 95%이하를 채권에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국고, 통안, AA등급이상 회사채 : 0~50%

- 금리전망에 근거하여 듀레이션 조절을 통해 자본이익 추구
- 각 채권별 다양한 분석을 통한 상대가치 투자



롱숏전략

- 상승/하락에 대한 확신이 높은 종목들로 구성 (long, short, pair trading, enhanced 전략^{주1)}으로 분류)
- Net Exposure^{주2)}는 20~30%수준에서 관리
 - 롱 포지션(Long Position)
 - 주식 매수 50~80%
 - 숏 포지션(Short Position)
 - 주식 차입 매도 0~20%
 - 주가지수 선물 매도 0~40%

주1) enhanced 전략 : 절대저평가 가치주, 시장환경과 무관하게 장기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회사들을 선별하여 매수(long)

주2) Net Exposure : long(주식매수 평가비중)에서 short(주식 차입매도비중과 주가지수선물매도비중)을 차감한 것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노출도를 의미함

[주식 투자 전략]

시장상황에 따른 주식시장 노출도 조절과 개별주식 롱숏전략으로 코스피 대비 변동성을 축소시켜 BM대비 초과수익 달성 추구합니다.

- Long-Short 전략 :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롱 포트폴리오(주식 매수)를 구축하고,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숏 포트폴리오(주식 매도)를 구축합니다.
- Pair Trading 전략 : 사업환경이 유사하고 가격의 상관 관계가 비교적 높은 동일 산업 내 종목으로 각각 롱과 숏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 Enhanced 전략 : 저평가 영역에 있는 가치주 중심으로 롱 포트폴리오를 구축합니다.

[채권 운용 전략]

저평가된 채권을 발굴하여 상대가치 투자를 하고 금리 전망에 근거한 듀레이션 조정을 통해 자본이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 듀레이션 전략 : 금리전망에 근거하여 단계적, 점증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듀레이션 조정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합니다.

*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 :

듀레이션은 단순히 최종 원금상환 시점을 의미하는 만기와는 달리 모든 현금수입 발생시기와 규모 등 현금수입의 시간적 흐름을 고려하고 있는 개념으로 만기, 채권수익률 및 표면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채권의 경우 듀레이션은 약 2.7년입니다. 따라서 채권의 금리변동 위험측정 수단으로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가 상승(하락)할 때 채권가격의 하락(상승)폭이 커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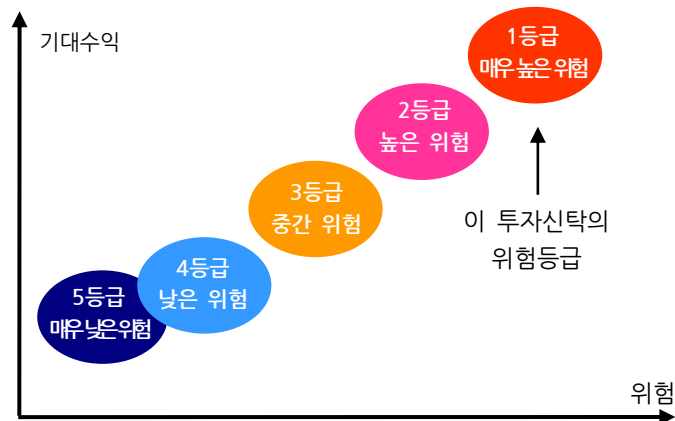
- 수익률곡선 전략 : 채권은 액면가와 이자가 정해져 있으며, 할인식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만기가 다가올수록 채권가격은 오릅니다. 따라서 채권의 만기가 줄어들면서 마치 돌이 굴러 떨어지듯이 급격하게 금리가 하락하여 자본이익 발생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이를 채권의 롤링(Rolling) 효과라고 하며, 수익률 곡선상 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의 채권을 매수하여 롤링효과를 누리는 채권투자전략입니다.

※ 비교지수 : KIS국고채1~2년 지수×80% + KOSPI×20%

3.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요 운용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산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 매도위험	이 투자신탁은 증권의 차입 및 매도를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지만, 차입한 주가가 예상과 달리 상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증권차입거래비용 등으로 인하여 매수전략만 구사하는 전략에 비하여 원금손실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5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모집합투자기구(주식혼합형)에 투자하는 증권자집합투자기구(주식혼합형)으로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위험을 감내할 만한 위험 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적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 하다고 생각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트러스트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트러스트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

(2013.2.28. , 단위:개,억원)

성명	출생연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김주형	1970년	주식 운용 SI 본부장	3	1,393	학력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 경력 96.01 ~ 00.07 SK증권 00.08 ~ 02.06 KB자산운용 02.06 ~ 06.05 맥쿼리IMM자산운용 06.12 ~ 09.11 KTB자산운용 09.12 ~ 11.07 피데스투자자문 11.08 ~ 現 트러스톤자산운용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여중훈	1974년	채권 운용 팀장	15	6,553	학력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 경력 99.07~08.04 교보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팀 08.05~10.12 NH-CA 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11.01~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채권운용팀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공인신용분석사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팀제 운용으로 주식운용 SI 본부 및 채권운용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상기의 운용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 해당사항 없음

6.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신규 펀드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은 가입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② ①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단위 : %)

구분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사무관리회사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보수비용	증권거래비용
-	0.420	0.500	0.015	0.015	0.002	0.952	1.000	0.832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사유발생시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 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주 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당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천원)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0	312	541	1,20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105	328	568	1,258

-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를 또는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세

과세대상		과세원칙	세율	과세시기
투자신탁		별도의 소득과세부담 없음	-	-
수익자	비과세 대상	계약기간 7년 유지 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농어촌특별세 1.4%	-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원천징수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 해지 또는 양도하거나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 시 감면 받은 세액 추징

□ 비과세 대상인 경우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은 가입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② ①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펀드 가입시 국세청 확인을 거쳐 비적격자로 통보 받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추가입금이 금지될 수 있으며, 다른 펀드로 이동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2015.12.31.까지 [가입신청 이후 익일 매수하므로 2015. 12. 30. 기준시간 이전까지 신규 신청(자금 납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저축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7년이며 7년이 도래하는 때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 가능합니다. (최대 10년) 단,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연장 전에는 7년, 연장 이후에는 그 연장한 기간까지)에 해지,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및 제3자에게 양도가 없어야 합니다.
가입한도	분기별 300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함)
세제혜택	계약기간 7년 유지 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됩니다. 다만, 재형저축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1.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배당소득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10)가 부과됩니다. ※ 최초 계약기간 7년이 도래하는 시점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 등의 인출시 연장한 기간 및 연장 이전 7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됩니다.
감면세액 추징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특별해지) 1. 천재·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특별해지하려는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3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재형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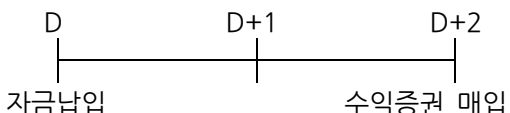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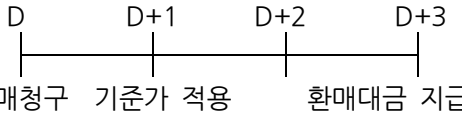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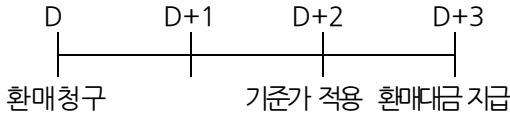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시 됩니다.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경과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 지급 

※ 단,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IV. 요약 재무재표

- 신규 펀드로 해당사항 없음